

4. 일반/특별휴학 및 복학

★ 일반휴학

재학 중 개인적인 이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, 학사일정에서 정한 휴학신청 기간에 학사시스템(GLS)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• 등록 전 일반휴학

- 학기 개시 전 일반휴학 신청 기간부터 최종등록 기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학사시스템(GLS)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등록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합니다.(단, 신청 시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.)

• 등록 후 일반휴학

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학사시스템(GLS)를 통해서 수업일수 3/4선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,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됩니다.

반환사유발생일	반환금액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(입학생, 재학생)	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/3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/2 해당액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
※ 등록금은 장학금이 있을 경우 감면된 후의 금액으로 함

- 분할납부자 중 등록금 일부를 미리 낸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학기 중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.

• 일반휴학 가능 학기 제한

- 휴학 신청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.
- 일반휴학은 학사과정은 6개 학기(의과대학 8개 학기), 석사 및 박사과정은 3개 학기(특수대학원 석사과정 4개 학기), 석박통합과정은 6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.

-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휴학 학기 수는 재학 중 사용가능한 휴학 학기 수에 포함됩니다.
- 입대휴학 및 특별휴학(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창업휴학)은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.

★ 특별휴학

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·출산·육아를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있으며, 창업 준비나 운영 등을 위하여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•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-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. (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.)
-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역시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 시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등록한 학기 중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무료복학 대상이 되며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.

• 창업휴학

- 1회 신청 시 1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.
- 창업휴학신청기간은 일반휴학신청과는 달리 소정의 기간(개강 2주전)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18년 7월 1일부터 창업휴학업무는 창업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신청학생은 창업휴학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, 사업계획서 등을 창업지원단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. 소속 대학행정실과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창업지원단 창업교육·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를 기본으로 창업휴학 자격을 심의하고, 심의에 통과되면, 학사지원팀에서 최종적으로 창업휴학을 승인합니다.

★ 일반복학

일반휴학 및 특별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학하기 위하여 복학 신청해야 합니다.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·복학 기간 내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**일반복학자의 등록**
 - 복학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.
 - 수강신청은 복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 전이라도 가능하며, 등록금 납부는 개강 후에 있는 추가 등록기간까지 가능합니다.
- **일반복학의 제한**
 - 대계열로 입학한 학사과정 신입학생 중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휴학한 학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춰 복학하여야 하며, 이 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복학(엇학기복학)할 수 없습니다.